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한산초등학교

내 용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물품 추정가격 1천만원(1회 납품 총액 기준) 이상 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물품선정위원회 대상 모든 물품 구매 시 블라인드 평가를 적용해야 하며, 업체명, 브랜드명, 모델명 등 평가위원들이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고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산초등학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물품선정위원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현황

회계연도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구분
2020	운동장 배수로 안전덮개 구입	1인수의	2020.11.19.	19,077,300원	물품선정위원회 미실시
2021	한산초병설유 현가, 급식실 연결통로 차양막설치	조달 3자단가	2022.1.20.	73,893,840원 (조달수수료 제외)	블라인드 평가 미실시

[조치할 사항]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오니, 한산초등학교장은 앞으로 관련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 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한산초등학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회의소집 등)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또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에서 회의록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의거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산초등학교에서는 아래 <표1>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기일을 초과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다.

<표1> 2020~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통보일 미준수 내역

학년도	회의명	회의개최일	개최통보일	정당통보일
2020	학교운영위원회 제4회	2020.09.02.	2020.08.26.	2020.08.25
	학교운영위원회 제5회	2020.10.14.	2020.10.07.	2020.10.06
	학교운영위원회 제6회	2020.11.02.	2020.10.28.	2020.10.25.
	학교운영위원회 제7회	2020.12.16.	2020.12.09.	2020.12.08
	학교운영위원회 제8회	2021.02.17.	2021.02.10.	2021.02.09
2021	학교운영위원회 제4회	2021.10.12.	2021.10.05.	2021.10.04
	학교운영위원회 제1회	2022.04.11.	2022.04.04	2022.04.03
2022	학교운영위원회 제2회	2022.05.30.	2022.05.23.	2022.05.22

또한, 아래 <표2>와 같이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기일을 초과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으며, 2020~2021학년도 회의록에 발언요지 등 회의절차를 누락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표2> 2020,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결과공개 미준수 내역

학년도	회의명	회의개최일	결과공개	회의공개일	정당공개일
2020	학교운영위원회 제4회	2020.09.02.	미공개	-	2020.09.08
	학교운영위원회 제5회	2020.10.14.	미공개	-	2020.10.20
	학교운영위원회 제6회	2020.11.02.	미공개	-	2020.11.08
	학교운영위원회 제7회	2020.12.16.	미공개	-	2020.12.22
	학교운영위원회 제8회	2021.02.17.	미공개	-	2021.02.23
2022	학교운영위원회 제4회	2021.09.22.	지연공개	2022.09.30.	2022.09.28

[조치할 사항]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오니, 한산초등학교장은 앞으로 관련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3
------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한산초등학교

내 용

「2022 고양 교육회복 종합 지원 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교부 알림」(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3734(2022.3.22.))에 따라 해솔초등학교는 「2022학년도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맞춤형 교과별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2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안내(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월·불용 및 낭비요인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 범위 내에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후 강사활동부와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산초등학교 교사 ○○○ 외 2명은 아래 <표>와 같이 운영일지 및 지도안에 기재된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조퇴, 외출, 출장 등의 복무처리가 되어 있거나, 변경한 수업 시간을 관련서류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 운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지도교사의 서명이 날인된 운영일지를 제출하여 프로그램 운영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표>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현황

연번	교사명	수업일시	차시	지급금액(원)	복무상황
1	○○○	2022.4.22. 14:10~14:40	1	40,000	조퇴/육아시간(13:40~16:40)
2		2022.4.27. 13:30~15:30	2	80,000	육아시간(14:40~16:40)
3		2022.4.29. 14:10~14:40	1	40,000	출장(13:30~16:40)
4		2022.5.2. 14:10~14:40	1	40,000	조퇴(11:00~16:40)
5		2022.5.4. 13:30~14:30	1	40,000	조퇴/육아시간(12:40~16:40)
6		2022.6.21. 14:30~15:00	1	40,000	조퇴/육아시간(13:40~16:40)

연번	교사명	수업일시	차시	지급금액(원)	복무상황
7	○○○	2022.5.16. 13:00~14:20	2	80,000	조퇴(13:30~16:40)
8		2022.5.23. 13:00~14:20	2	80,000	조퇴(13:30~16:00)
9	○○○	2022.5.26. 14:30~15:50	2	80,000	조퇴(14:40~16:40)

[조치할 사항]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하오니, 한산초등학교장은 앞으로 관련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